##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131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김예지

고동진 · 김상훈 · 김용태

주호영 · 조정훈 · 서천호

박수민 · 안상훈 · 강명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사업장 폐쇄명령이나 사업의 정지 및 처벌규 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상품이 온라인플랫폼에서 중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함)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도록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5신설, 제89조, 제89조의2 신설, 제130조 및 제132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6조의5(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통신판매중개 제한) ①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 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 신판매 중개를 말한다)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제86조제 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미신고 농어촌민 박사업자인 경우 해당 의뢰 내용의 삭제 및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수 여부의 확인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8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통신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6조의5의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이 제86조의5를 위반하여 판매중개를 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0조제3항 중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① 제86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ul> <li>✓신 설&gt;</li> <li>제86조의5(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의 통신판매중개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통신판매중개(같은 법제2조제4호에 따른통신판매중개(같은 법제2조제4호에 따른통신판매중개를말한다)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제86조제1항전단에 따른신고를하였는지확인하여야한다.</li> <li>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따라확인한결과 미신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인 경우해당의뢰내용의 삭제 및 소비자에게 고</li> </ul>
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수 여부 확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 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 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 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 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u><신 설></u>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1. ~ 9. (현행과 같음)
10.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
박사업을 한 자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통신판매중개업 등에
대한 영업 정지 등)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86조의5의 통신판매중개업
자등이 제86조의5를 위반하여
판매중개를 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제130조(벌칙) ① • ② (생 략)

③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32조(과태료) <신 설>

<u>①</u>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u>다.</u>

- 제13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_\_\_\_\_

----**.** 

- 1. 제18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2.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 ④ (현행과 같음)
- 제132조(과태료) ① 제86조의5제2 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자등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

\_\_\_\_\_

-----.